

제42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20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상정된 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2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2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2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2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2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2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2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2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3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3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	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	3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	3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	3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	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	3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	3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	3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3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3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	3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	3

---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미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2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대안 조문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토대로 정리한 대안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군복무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출산크레딧 관련하여 첫째 자녀의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 기간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51조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88조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인데 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게 됩니다.

안 제100조의4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부터이고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

니다.

출산크레딧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종전 규정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경우에는 50개 월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석전문위원 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우선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애초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1년 반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어렵고도 정석인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우려와도 다르게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에 찬성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대체율 50%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논의를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인 41.5%에서 그냥 1.5% 더 되는 43%에 합의하기에 이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소득대체율인 50%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이 논의가 된 것도 굉장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그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또 현재 이 안으로 가게 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보강 정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구조상 국민연금은 실제로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 노인들을 잘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고 특히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 기간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가 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현세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개혁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진전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이라서 어떠한 안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인데 이것이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미화 위원** 연금개혁 협의를 이루기까지 우리 여야 위원님들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 정말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다

소 미흡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고 정말 이번 개정안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소위 때 안건을 그래도 1차로 어느 정도 심사를 한 덕분에 추후에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 양당 간사가 논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기일 차관님을 비롯한 복지부의 연금 관련한 연금실장, 정책국장 여러분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세대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또 이것을 보니까 나름의 계산하는 방식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 모두를 만족하기 어렵고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수개혁 중심으로 지금 오늘 소위를 통과하지만 구조개혁은 오늘 합의문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고 또 2의 5항에 보면 논의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즉 재정안정화 조치를 비롯한 4대 연금 등을 개혁 논의 방안으로 설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 조금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소위원님들 정말 관심 갖고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4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1차관님,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네요.

(웃음소리)

연금개혁 배지도 달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달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여기 오른쪽에 달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안 되고 지금 벚꽃이 필 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서미화 소병훈 이개호 장종태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연금정책관 진영주